

보도해명자료

(15. 10. 1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외자 투자유치는커녕 대기업 배만 불리는 외투법
(15.10.15, 서울신문)

1. 기사내용

□ 외투법은 외국자본투자유치 효과는 크지 않은 채 대기업 배만불림

* (주)일산씨월드 : 외국투자금액 1억6천만원, 토지임대료 5%를 1%로 감면

* 원마운트 : 외국투자금액 12억원, 토지임대료 5%를 최종 0.25%로 감면

□ 외투법이 쥐꼬리만한 투자로 몇십배 이익을 보는 대기업의 창구로 활용되고 지자체는 힘든만큼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외국인투자촉진법(이하 '외촉법')은 외국인투자기업 중 우리 경제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

○ 기사에 제시된 '(주)일산씨월드', '원마운트'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, 이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「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'외촉법'에 근거하지 않은 바, "지자체는 힘든만큼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"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필요시 당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으로 해결할 사항임.

* '외촉법'은 국유재산 등의 임대 등에 관한 수의계약 요건을 규정하여, 인센티브 부여 시 외국인투자비율 30% 이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지속하도록 하고 있으며, 미충족시 관련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서 제외 (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)

○ 또한 사례로 제시된 '원마운트'의 경우, '대기업' 투자에도 해당되지 않음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용채과장, 정보경사무관(044-203-4074)
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주소령과장, 박진철사무관(044-203-4083)